

J. Locke의 自然權論에 대한 비판적 검토

—人權概念을 照明하기 위한 試論—

李宗律

The critical examination of Locke's natural right theory

Lee, Jong-yool

〈目次〉

I. 序

II. Locke의 自然權理論·自然法思想

III. Locke의 所有權理論과 문제점

IV. 結

Abstract

J. Locke, among modern natural right theorists,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The reason is that his theory was able to supporting the bourgeois ideas, especially the right of possession.

In spite of the above, his natural right theory must have had many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is critically dealing with Locke's right of possession as the natural right.

I. 序

西歐社會에서 인간들이 전근대적 질서를 부정·해체시키고 근대적 질서를 정립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회적 진통현상이 이른바 근대 시민혁명이었다. 시민혁명 이후 인간이 얻어낸 결과는 身分的拘束으로부터 자기를 解放시키는 인간으로서의 권리회복이었다.

인간이 身分的拘束으로부터 자기를 解放시키고 自覺的·主體的 人間像을 인간의 참모습으로 요구하고 실현시켜 가는 역사 과정의 한 단계였던 근대 시민혁명에, 근대 자연법사상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것은 근대 자연법사상이 인간이 자기를 身分的拘束으로부터 解放시키는 역사적 단계였던 시민혁명 과정에서 이론적 밀반침이 될 수 있었던 사상체계였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근대와 현대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人權이라는 개념과 근대 자연법이론을 관련시켜 생각하는 경우 특히 Locke의 사상은 근대 자연법사상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그 영향이 깊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근대 자연법사상의 典型으로서는 주로 Hobbes, Locke, Rousseau 세 사람이 생각되지만

Hobbes의 경우에는 인간의 自由 및 財產을 自然權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을 主權者에게 일임시켰다는 점에서, 또 Rousseau의 경우에는 私有財產의 발생이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分析하여 그것을 Locke처럼 국가이전의 不可侵의 自然權으로, 永久의 權利로서 국가형성 이후에도 계속保持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해석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근대 시민혁명 이후 西歐에서 확립된 資本制社會 人權體系의主流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되기에 이 논문에서는 Locke를 素材로 선택하였다.¹⁾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근대와 현대의 人權體系에 대한 하나의 반성적 계기를 이론적으로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자연법사상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그의 自然權理論과 그것에 관련된 所有權理論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술하고자 한다.

I. Locke의 자연권이론·자연법사상

前近代社會의 人間像과 시민혁명 이후 성립된 근대사회에 있어서의 人間像의 본질적인 차이는 밝힌대로 근대사회에서의 인간이란 自覺的·主體的 人間, 즉 모든 개인은 독립된 존재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곳에서는 身分의 上下, 職業上의 貴賤이라는 불평등한 수직적 인간관계를 배제하는 방향의 사회법칙이 반영된 질서가 현실의 논리로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 시민사회의 인간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서 파악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인데, 근대 자연법 사상은 이러한 근대적 질서에 상응하는 人間像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근대 시민혁명 단계의 역사적 현실을 정당화해줄 밑받침을 마련했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었다. Locke도 역시 근대 자연법 사상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그 전통이 바로 自然狀態를 理論的으로前提시킨 점인데, 그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는) 사람들 각자가 다른 사람의 허가를 요구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意志에 의지한다든가 하는 일 없이 자연의 법(the Law of Nature)법위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규정하고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所有物과 身體를 처리하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다. 그것은 또한 평등한 상태이기도 하며, 거기에서는 지배권과 재판권은 모두 호혜적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같은 종류, 같은 등급의 피조물은 차별을 두지 않고 生(生)을 향유하며, 자연의 혜택을 똑같이享受하며 똑같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며 종족이나 복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명료하기 때문이다.」²⁾

이와같이 Locke는 자연상태라는 假想狀態를 理論的으로 정립하여 현실의 인간상태가 奴隸狀態의秩序로 확립되는 것을 부정하여 신분적 구속으로부터 解放된 인간모습을 인간의 참모습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自然狀態란 이처럼 근대적 人間像을 그려내기 위한前提였고 또 모든 Locke의 법 및 정치·경제이론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假想狀態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는 自

1) 下山英二：人權の歴史と展望(京都：法律文化社, 1977), pp. 32~34.

2)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New York : The New American Library, Inc., 1965), p. 309.

然狀態 이후의 다음 단계를 이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政治社會의 문제인데, 그러면 왜 인간은 政治社會를 形成할까, 그 이유는 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自然狀態에서는 正邪의 기준으로서 인간 상호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의 척도로서 확립된 일정한 衆知의 法이 없으므로,理性 있는 動物로서의 인간에게 自然法이 비록 自明한 것이기는 하지만 人間의 이해관계 등으로 말미암아 자연법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대립이 있는 경우 확립된 법에 따라 모든 不和의 해결을 도모할 權威를 갖춘 衆知의 재판관이 없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즉 자연상태에서는 각자가 모두 자연법의 재판관이 되어 재판을 주재하겠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폐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격정과 복수심에 이끌려 지나친 행동으로 나가기 쉬운 대신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극히 無關心하거나 無責任하기 쉽다는 사실 때문이다. 셋째,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이란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 하므로 自由와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도 강력하지 못하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³⁾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自然狀態에서는 모든 사람의 權利享受가 불안정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의 재산(Property)을 안전하게保持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에 따라 政治社會를 형성하고 政府를 수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Locke의 기본적인 政治權力觀이었다.⁴⁾

즉 自然狀態에서는 인간의 자기보존이 불편하고 불안하므로 그들이 자연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特權을 스스로 포기하고 政治社會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Locke의 기본적 정치관인데, 그러면 合意에 의해서 形成된 政府에 계약 참여자인 인간들은 어떠한 權力を 위양할까?

그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두 가지의 權力を 갖고 있다고前提하였다. 그 하나는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權力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자연법에 배치되는 상황이 개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처벌하는 權力(이른바 自力救濟權)이었다. 그런데 인간들은 合意에 의하여 政治社會를 形成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權력을 잃게된다. 이처럼 인간은 政治社會를 形成하는 경우 두 가지의 권력을 잃게되나, Locke는 단서를 거기에 붙이고 있다. 즉 두번째의 權力인 처벌권은 無條件的으로 잃게되나 첫번째의 權力은 각자의 그리고 공동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보존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포기될 뿐이라는 것이다.⁵⁾

이와 같이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特權을 포기하고 비록 政治社會를 形成하더라도 無條件的으로 포기당하지 않는 權利가 바로 그에 있어서의 自然權인데, 그것은 ①「자기의 신체에 대한 自由權」으로 이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고, ② 재산을 상속하는 권리이다.⁶⁾ 그의 이런 自然權이란 바로 그가 말하는 인간의 자기보존권(The right of self-preservation).

3) Locke, *op. cit.*, pp. 396~397.

4) *Ibid.*, pp. 366, 374~375, p. 395 참조.

種谷春洋, 近代自然法學と権利宣言の成立(東京:有斐閣, 1980), pp. 134~137 참조.

5) Locke, *op. cit.* pp. 397~398.

ervation)과 관련되는 개념인데, 특히 그의 이 自然權이란 政治社會가 形成되어 政府가 수립되더라도 인간이 포기할 수 없는 權利이므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요구된다. 그것을 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우선 그의 自然法理論에 대한 간략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에 의하면 理性의 法으로서 自然法이란 不文法으로 인간의 마음속 이외의 어디에서도 發見될 수 없는 법이지만 자연법이 인간에게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自己保存의 權利이다. 理性은 인간이 그 자신의 主人이며 또 인간이 生存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수단들을 지배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가르치며,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自己保存의 欲望과 權利에 있어서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비록 인간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自己保存의 문제에서만은 同等한 權利의 主體라고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自己保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고 자연법은 가르쳐 주나 자연법을 탐구·연구해야 될 이성있는 主體로서의 인간은 자기마음 속에서 發見할 수 있는 이 自明한 原理를 탐구·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지 못하므로 自然法이 지배하는 자연상태는 끊임없는 公포와 위협으로 가득차 있을 뿐이라 하였다.

그러나 理性은 평화의 상태가 아니면 生(生) 그 자체의 享有는 물론이고 保存까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理性的인 動物인 인간은 平和를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위만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理性이 가르치므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自明한 理性의 法으로서 나타난다.

그런 까닭으로 理性을 포기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처벌을 받게되며 또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⁶⁾

이상의 설명이 그의 자연법사상의 핵심부분이었는데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의 自然法이란 인간의 상호적인 安全과 平和에 관해서 理性이 지시한 총합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의 풀자는 인간의 自己保存과 방위에 관련되는 결론체계 혹은 일반원리로 요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자기방위 혹은 보존과 관련되어진 결론체계 혹은 일반원리를 그의 自然法으로 해석한다면 그의 입장에서는 밝힌대로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각자가 그의 身體나 所有物의 절대적 지배자이며 또 그것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自己保存과 방위도 가능하므로 그것을 지배하는 權利로서 自然權이란 自然法보다도 더 본래적이며 나아가서는 自然權이 바로 自然法의 기반이 된다고 까지 推論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政治社會가 形成된 이후의 實定法이란——비록 自然法이 인간들의 權利를 결정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능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自然法의 보완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6) *Ibid.*, p. 441.

위의 두 가지는 직접 生來의 權利로서 Locke는 언급했지만, 이것 외에도 그는 移住權도 生來의 自由로 주장하고 있다.

(*Ibid.*, pp. 389~390; 種谷春洋, 前掲書, p. 148 참조).

7) Locke, *op. cit.*, pp. 311, 315~316, 319, 329~330, 365, 376, 403 참조.

Leo Strauss,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pp. 225, 227~228 참조.

種谷春洋, 前掲書, p. 148 참조.

고 그가 주장하고 있으므로 自然權은 前國家的인 權利로서 政治社會가 形成되더라도 포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국가법질서는 이러한 자연권을 보호하는 데 그 참된 가치가 있다고 파악하였다.⁸⁾

이상과 같은 그의 法思想, 自然權論, 政治觀에서 그 특유의 所有權理論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 데 後述하는 대로 특히 그의 所有權概念은 自然權의 次元으로까지 승화되어진 개념이었고, 또한 근대 시민혁명 이후 西歐社會의 政治·經濟秩序가 개인의 私有財產을 安全하게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확립·발전했었고, 동시에 法秩序도 그에 상응하여 所有權絕對原則위에서 順成·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때, 전근대적 질서가 부정·해체되고 근대적 질서가 성립된 이후 확립된 근대법질서 속에서의 人權問題를 생각할 경우, 소유권은 人權과 중대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 까닭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신분적 구속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근대 시민사회의 소유양식에 의해서 인간관계에 새로운 예속질서가 나타났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밝힌대로 Locke의 이론은 Hobbs나 Rousseau의 이론을 제치고서 근대 시민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이론이 근대시민 사회의 역사적·현실적 조건과 상당히 합치될 수 있었다는 데 原因이 있었으므로, 근대시민 사회의 人權concept은 비록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人權問題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의 所有權theory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理論的으로 價値가 있을 것이다.

III. Locke의 所有權理論과 문제점

밝힌대로 Locke에서 自然法이란 自明한 理性의 법이지만, 理性의 主體로서 인간은 성실하게 이 自然法을 탐구하지 않아서, 自然法이 지배하는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의 自然權保護는 불확실하고 불안하므로 政治社會를 형성하게 되고, 政治社會에서 확립된 實定法을 배개로 해서 인간의 포기할 수 없는 權利인 自然權을 安全·確實하게 보호하려는 데 政治社會 形成의 목적이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인간의 물질을 소유하는 행위 그 자체는 인간의 自己保存을 위해서 필연적이므로 政治社會의 形成目的이 그것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확대·해석하더라도 커다란 無理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또 Locke는 自然狀態에서는 물질은 萬人이 共有하는 상태라 하였으므로 자연상태에서 共有이었던 對象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인의 소유물로 전환되며 또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은 政治社會가 形成되더라도 어떤 보호를 받을까가 해명되었을 때 所有權이 自然權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8) Locke, *op. cit.*, pp. 401~403 참조.

Strauss, *op. cit.*, p. 227 참조.

種谷春洋, 前掲書, p. 146 참조.

우선 소유권이 발생하는 과정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그에 의하면, 「大地와 인간이하의 被造物은 모든 사람의 共有物이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本人 이외의 누구도 아무런 所有權을 갖고 있지 않다. 그의 身體의 勞動과 그 손의 움직임은 틀림없이 그의 것이라고 말하여도 좋다.」

그리하여 自然이 준비하고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로부터 그가 가지고 가는 무엇이건 그는 이것에 자기의 勞動을 혼합하고 또한 이것에 무엇인가의 자기 자신의 것을 첨가하고 그려함으로써 그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에 의하여 놓여진 共有의 상태에서 그가 가지고 간 것 이므로 이 勞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共有權을 배제하는 무엇인가가 그것에 첨가된 셈이 된다. 왜냐하면 이 勞動은 勞動한 사람의 틀림없는 所有物이므로 적어도(自然의 혜택이) 共有物로서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그리고 똑같게 많이 남겨져 있을 경우에는 한번 勞動이 첨가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아무도 權利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⁹⁾

그는 所有權이 발생하는原因是 이처럼 인간의 절대적·배타적 소유물인 각자의 身體를 그가 움직이기 때문에 즉 신체의 所有主體로서 인간의 自己勞動에서 찾았으므로 앞에서 밝힌 自然權의 意味를 생각할 때 所有權은 自然權이라는 等式은 成立될 수 있을 것이다.

所有權 發生原因은 인간의 자기노동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는 뼈갈나무 밑에서 주운 도토리나 솔속의 나무로부터 긁어온 능금이 共有物로부터 구별되는 이유도 긁어모온다는 勞動에 있다고 해석하였으며, 나아가서 理性의 法인 自然法은 勞動을 投下한 사람이 재산을 갖게 된다고 가르치며, 그리고 인류중에서도 文明의 혜택을 입은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 즉 所有權을 결정하기 위한 實定法을 제정하고 그것을 증가시켜온 사람들(이것은 政治社會가 形成된 상황을 의미한다) 사이에서도 이전에는 共有이었던 것 속에서 발생되는 소유권 문제를 본원적인 自然法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¹⁰⁾

거기에서 인간이 自己保存을 위해서 自己勞動을 投下하여 얻어낸 所有物에 대한 權利는 協約이라든지 契約이 필요하지 않을 權利일 뿐만 아니라(인간을 創造한) 神의 權利에까지도 대항할 수 있는 自然權으로 까지 發展될 수 있는 절이 열렸다.¹¹⁾

또 自然狀態란 밝힌대로 所有物의 保全이 不安하고 불편하여, 즉 所有權을 安全하게 보호해줄 法秩序가 결여된 상태였으므로 인간은 政治社會를 形成하여 自然權으로서의 所有權을 좀 더 安全하게 보존하려는 것이었으므로, 政治社會가 形成되더라도 통치권을 위탁받은 인간들이 所有의 安全한 보호에 침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가 분명히 못박는 것은 당연한 논리구결이었다.¹²⁾

Locke가 自然權으로서 所有權을 얼마나 격렬하게 옹호했던가는 다음과 같은 그의 설명들에서 發見할 수 있다.

9) Locke, *op. cit.*, pp. 328~329.

10) *Ibid.*, pp. 329~331.

11) Harvey C. Mansfield, Jr., "On the Political Character of Property on Locke," in *Powers, Possessions, and Freedom* (Tronto: University of Tronto Press, 1979) p. 35 참조.

Strauss, *op. cit.*, p. 236 참조.

12) Locke, *op. cit.*, pp. 386~387, 393, 395, 398~399, 404, 406~408, 428~429 참조.

예를 든다면 상관은 병사에게 敵의 破口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명령한다든가, 심중 필구는 戰死할 것이 틀림없는 위험앞에 나가도록 명령할 수는 있지만 그 병사에게 그가 갖고 있는 돈을 한푼이라도 내놓게 할 수는 없다든지, 전쟁에 승리한 정복자일지라도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피정복자의 재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것이라도 그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정도로 所有權을 神聖視했었다.¹³⁾

이처럼 所有權의 본성이란 神聖하며, 본인의 同意없이는 어떤 것도 그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점에 있는데, 만약 政治社會 형성 후 통치권자가 개인의 同意없이 소유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민중은 저항할 수 있으며, 그것이 反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神 앞에서 죄가 아니라고 밝혀 주었다.¹⁴⁾

다른 한편 Locke는 인간이 自己勞動을 投下해서 소유한 물건이 예를 든다면 과실이나 노루고기가 소비되기전에 상한다든가, 썩는다든가 하면 그는 萬人에게 공통한 자연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하여 소유물의 내용을 量的으로 制限하기도 하였다.¹⁵⁾

그러나 所有物이 自己手中에 있는 동안 헛되게 썩어버리지 않도록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그 자신이 그 뜻도 이용한 결과가 되므로 한 주일 동안에 썩어버릴 수 있는 차두를 일년동안이나 썩지않고 먹을 수 있는 호도와 교환하면 그는 自然法을 침해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洋毛를 번쩍 번쩍 빛나는 조그만 들이나 다이어먼드와 교환하고 이것을 일생동안 保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구성이 있는 물건은 마음대로 축적할 수 있는 길을 이론적으로 열어 주었다.¹⁶⁾

여기에서 所有物을 保存·享受하는 權利, 즉 所有權은 비록 量的制限을 받는다 할지라도 交換이 절대적 의미를 갖는 市場 經濟秩序에서는 그러한 量的制限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交換이 절대적 의미를 갖는 市場 經濟秩序下에서는 所有物의 양적제한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를 無限定 축적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市場 經濟秩序에서 교환메카니즘을 원활히 해주는 수단이 화폐라는 사실을 떠 올릴때——그 무엇이 바로 화폐이다. Locke도 이런 상태를 예견하고 無限한 축적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구성과 희소성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장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이 없으면 비록 土地가 풍부하더라도 또 제멋대로 가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자기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土地라고 하는 所有物을 확대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나 이웃사람들 사이에서 화폐로서 통용하고 그 가치를 지닌 무엇인가가 發見되었다고 하면 發見한 그 사람은 당장에 所有者의手中에서 손상되거나 부패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저장할 수가 있다.

13) *Ibid.*, pp. 407~408, 343~345, 436~437 참조.

14) *Ibid.*, pp. 442, 443~444, 448~449, pp. 450~451 참조.

松本昌悅, 現代憲法と人權の課題(東京: 成文堂, 1978), pp. 61~62 참조.

15) Locke, *op. cit.*, pp. 332, 335~336, 342.

16) *Ibid.*, p. 342.

그래서 토지생산물의 과잉분과 교환으로 그것을 받음으로서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거기서부터의 생산물을 다 이용할 수 없는 정도의 토지를 정당하게 소유하는 방법을,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이용하는 화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며, 그 결과로 발생되는 私有財產의 不平等도 정당하다는 것이었다.¹⁷⁾

다시 말하면 인간은 自發的으로 同意하여 화폐를 이용하게 되는데 인간은 화폐를 가지고서 토지의 소유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화폐는 토지에 올타리를 치려는 인간들의 목적물로 되어 화폐가 所有物을 無制限的으로 擴大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환이 기반이 되는 경제질서에서는 인간은 화폐를 수단으로 해서 자기의 생활개선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화폐에 문에 所有關係가 不平等해지더라도 그것은 正當한 所有關係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더 많은 소유물을 얻어 자기 생활을 개선시키려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의 소유물을 빼앗을 필요없이 화폐를 취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며 인간이 더 훌륭한 자기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自己保存權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權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그것은 黑대로 理性의 法으로서 自然法에도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도 당연하다.¹⁸⁾

여기에서 Locke의 自己保存과 關聯되어진 自然權으로서의 所有權理論이 근대 시민혁명 이후 資本主義의 經濟秩序가 확립되는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던가는 충분히 짐작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근대 資本制社會의 경제생활이란 전근대 사회의 경제생활과는 달리 市場, 즉 화폐가 수단이 되는 교환관계가 기본양식으로 된 經濟秩序이므로 그의 이런 所有權理論은 근대 자본주의의 확립단계에서 부르죠아계층의 無限한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이론적으로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自己勞動에서 출발하여 화폐의 無限한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데까지 발전되어진 이와같은 그의 所有權理論은 그의 政治的立場을 생각할 때 나태하고 勞動하지 않은 전근대질서 속에서의 特權階層이나 하층의 貧者(즉 浮浪者)階層을 겨냥한 다분히 意識的으로 의도된 이론으로서, 당시 새로운 社會勢力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신홍중산계층, 특히 자영농민계층의 솔직한 대변자의 입장이었다고 추정되기도 한다.¹⁹⁾

그러나 그의 이런 논리의 所有權理論 때문에 시민혁명 이후 확립된 근대 자본주의적 질서속에서 그의 이론이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지위로까지 상승할 수 있었으며, 또 그러한 경제질서와 관련된 근대법질서에 있어서 人權의 概念을 결정지워 줄 수도 있는 밀반침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전근대적질서가 부정·해체되는 과정에서 근대 자연법사상 특히 Locke의 이론이 黑대로 근대 시민혁명의 이데올로기로서, 또 근대국가에 있어서 身分的拘束으로부터 解放된 개인의 人權體系가 법률적, 정치·경제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반침돌이 되었음은 분명하지만 현실의 사회구조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그려내는 人間像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7) *Ibid.*, pp. 210~213.

18) Strauss, *op. cit.*, pp. 237, 240, 246 참조.
Mansfield, *op. cit.*, p. 35 참조.

19) 大河内一男, 社會思想史(東京:有斐閣, 1959), pp. 65~67, 71 참조.

그곳에서는 부르조아, 프로레타리아, 혹은 농민계급 등등의 계급계층간의 이해관계 속에 얹혀 있는 具體的인 인간만이 존재할 뿐이었으므로, 이러한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 얹혀 있는 人間像을 捨象하고 서 추상적인 自由·平等의 地位를 保持한 自覺的·主體的 人間像을 想定할 때 바로 그 순간에 自覺的·主體的 人間像是 虛像으로 탈바꿈되기 마련이다.²⁰⁾

그것은 自明의 原理로서 自然權, 즉 政治社會가 成立되어도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權利로서의 自然權이란 말하자면 客觀的·歷史的 事實에 의해서 檢증된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擬制的인 理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원인이 있다.²¹⁾

그 까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인간은 自己保存을 위해서는 生活資料의 획득이 필수불가결한데, 이러한 生活資料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人間關係가 바로 生產關係이다. 그런데 근대 시민혁명 이후 근대자본제 경제질서가 확립되는 단계에 있어서의 生產關係란 가진 者와 갖지 못한 者가 서로 분열·대립되었던 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근대 시민사회에서 自然權의 主體로서 인간이 享有하는 市民的 自由란 자본을 所有하는 者는 資本家로서, 商品을 所有하는 者는 商人으로서 自由를 享有할 수 밖에 없었는데 결국 勞動力이라는 商品을 所有하는 者는 임금노동자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自由만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모든 인간이 資本家로서 현실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점이 근대 시민社会의 현실적 조건이었다면, 봉건적 계급신분으로부터 解放되어 모든 인간이 自覺的·主體的 人間, 즉 시민적 자유를 누리는 存在가 되어 資本制社會가 성립되었을 때, 봉건사회에 있어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農奴階層은 土地에의 속박으로부터는 解放되었지만 自己勞動力의 판매를 통해서만 自己生存의 재생산과정을 보존할 수 밖에 없는 계층으로 轉落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실질적으론 資本家階層의 예속물에 지나지 않았음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²²⁾

그렇다면 Locke의 自然權으로서의 所有權理論은 근대 자본제사회의 經濟論理를 생각할 때, 밝힌 대로 가진 者가 더욱 더 많은 것을 所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결과이어서 그가 근대 시민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려낸 自由롭고 平等한 人間像과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되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人間像과의 사이에는 갈등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그의 이론적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근대법질서의 人權體系란 虛像化된 自覺的·主體的 人間의 權利體系에 불과한데 무슨 까닭으로 그의 理論, 특히 自然權思想이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로까지 발전될 수 있었던가. 더욱이 政治權力이란 그것은 조직된 무력을 기초적 요소로 삼기는 하지만, 단순한 物理的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구성원들의 이름으로서 승인되기 위한 정당성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왜 Locke의 自然權理論이 지배이데올로기로 까지 발전될 수 있었을까.

그 까닭은 밝힌 대로 自然權으로서의 그의 所有權理論은 영국의 독립자영 농민계층을 시민혁명 단계에서 그가 응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립한 이론이었지만, 그 이후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정치질서를 주도하여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였던 부르조아계층의 이데올로기에도 재산의 보장이라는

20) 下山英二, 前掲書, p. 45.

21) 松本昌悅, 前掲書, pp. 82~83.

22) 山中康雄, 法學(京都: 法律文化社, 1980), pp. 15~16 참조.

측면에서 추상적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²³⁾ 다시 말하면 근대 자연법사상·자연권이론이 표방했던 身分으로 부터의 人間解放이 갖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政治·經濟秩序를 주도한 부르조아계층에게는 알맹이가 있었지만 반대로 政治·經濟秩序를 주도하지 못한 세력이었던 농민계층, 임금노동자계층엔 껌데기만 있을 뿐이지 알맹이는 없는 상황이었으나 政治·經濟의 場에서 지배세력이었던 부르조아계층의 이례을로기에 그의 理論, 특히 所有權理論이 원칙적으로 합치되었으므로 그것이 근대사회의 법질서, 정치·경제질서에 수용되어 지배이례을로기로까지 발전되었다고 推論된다.

이런 결과를 놓고 생각할 때 비록 그의 自然權論, 특히 所有權理論은 과거대로 전근대사회의 特權階層을 의식하여 봉건적질서를 부정·해체시키는 시민혁명 과정에서는 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역사발전 과정에서는 일부집단의 解放과 自由만을 가져왔을 뿐이므로 근대 법질서속에서 所有와 關聯되어진 人權概念은 실질적으로 많은 自己界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IV. 結

이상에서 우리는 Locke의 所有權理論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自然權理論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人間解放을 선언하기 위한 이론적인 무기였던 그의 自然權論이 근대 시민사회의 지배이례을로기로 발전되었을 때는 人間解放이 아니라 오히려 人間에 의한 人間의 隸屬的支配를 정당화해준 결과를 초래시켰다. 그 원인은 自然權으로서의 所有權에 있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人權concept도 所有權을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Locke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人權concept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오늘의 단체에서는 고전적인 의미의, 즉 근대 시민사회와 같은 경제생활 논리는 상당히 부정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이런 부정현상이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所有權公共原則이 法秩序에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적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人權concept도 헌법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사회의 지배이례을로기란 지배이례을로기가 요구하는 虛偽意識이 인간의식 세계에서 참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쏟기 마련이므로 현대헌법의 인권체계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권적 기본권에 내재된 가치·신념들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自然權으로서의 人權concept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항상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비록 자유롭고, 평등한 人間像이 法言語로 法典에 수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現實의 政治·經濟秩序가 그 法言語言를 사실화 시켜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人間像이란 하나의 虛像化된 自覺的·主體的 人間像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23) 下山瑛二, 前掲書, pp. 46~51 참조.

그 까닭은 우리들이 Locke를 검토하면서 그가 自然狀態를 前提하여 그려낸 人間像과 그의 이론이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되었을 때 현실에서 나타난 人間像과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自然狀態의 人間像이란 하나의 假說的前提에 불과하였고 현실의 政治·經濟秩序란 그러한 假想的 人間像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條件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 기인하였으므로, 현대의 人權體系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들은 언제나 法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와, 법에 반영되고 있는 현실의 政治·經濟秩序를 동시적으로 고찰할 때 객관적인 人權概念이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1.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New York: The American Library Inc., 1965.
2. Leo Strauss,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3. Harvey C. Mansfield Jr, "On the Political Character of Property on Locke," in *Powers, Possessions and Freedom*, Tronto: University of Tronto Press, 1979.
4. 下山瑛二, 人權の歴史と展望, 京都: 法律文化社, 1977.
5. 種谷春洋, 近代自然法學と權利宣言の成立, 東京: 有斐閣, 1980.
6. 松本昌悅, 現代憲法と人權の課題, 東京: 成文堂, 1978.
7. 山中康雄, 法學, 京都: 法律文化社, 1980.
8. 大河内一男, 社會思想史, 東京: 有斐閣, 1959.

